

「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약관」 개정대비표

■ 등재위치: 인터넷 홈페이지(www.kbstar.com) > 전체서비스 > 고객센터 > 서식/약관/설명서 > 예금/채권

현 행	변 경	비 고
<p>제 1 조 (생략) 제2조 용어의 정의</p> <p>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.</p> <p>1. “계좌통합관리서비스”(이하 “본 서비스”라 함)라 함은 고객이 금융회사에 개설된 본인 명의 계좌(상호금융회사의 미지급출자금, 미지급배당금 포함) 및 카드 정보 등을 일괄조회하고, 일정 잔고이하의 비할동성 계좌(금융투자회사의 경우 다른 재산이 없고 현금으로만 보유한 계좌)를 <u>잔고이전·해지</u>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.</p> <p>2. ~5. (생략) (신설)</p> <p>6. ~12. (생략) <u>13. “핀테크기업”</u>이라 함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 승인을 받아 금융결제원과 이용계약을 <u>체결한 기업을 의미합니다.</u></p> <p><u>14. (생략)</u></p> <p>제 3 조(생략) 제 4 조(이용채널)</p> <p>본 서비스는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 및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애플리케이션과 <u>은행창구</u>, 금융회사 및 <u>핀테크기업</u> 비대면채널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.</p> <p>제5조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 이용방법 ~ 제8조 금융회사 비대면 채널이용방법 (생략)</p> <p>제9조 <u>핀테크기업</u> 비대면채널 이용방법</p> <p>고객은 <u>핀테크기업</u>의 비대면채널에서 해당 <u>핀테크기업</u> 인증 정책에 따른 본인인증 및 휴대폰인증 등을 거쳐 서비스 이용등록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.</p>	<p>제 1 조 (좌동) 제2조 용어의 정의</p> <p>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.</p> <p>1. “계좌통합관리서비스”(이하 “본 서비스”라 함)라 함은 고객이 금융회사에 개설된 본인 명의 계좌(상호금융기관¹의 미지급출자금, 미지급배당금 포함) 및 카드 정보 등을 일괄조회하고, 일정 잔고이하의 비할동성 계좌(금융투자회사의 경우 다른 재산이 없고 현금으로만 보유한 계좌)를 잔고이전·해지²하며, <u>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“계좌지급정지”</u> 등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.</p> <p>2. ~5. (생략)</p> <p><u>6. “계좌지급정지”란 고객이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하여 지정한 본인 명의 계좌에 대하여 자동이체를 포함한 모든 출금·고 거래가 정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. 다만, 금융투자회사 계좌지급정지의 경우 매매 거래는 제외됩니다.</u></p> <p>7. ~ 13. (좌동) <u>14. “계좌통합관리업무 이용기관”(이하 “이용기관”이라 함)</u>이라 함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 승인을 받아 금융결제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관을 말합니다.</p> <p>15. (좌동)</p> <p>제 3 조(좌동) 제 4 조(이용채널)</p> <p>본 서비스는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 및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애플리케이션과 <u>금융회사 창구</u>, 금융회사 및 <u>이용기관</u> 비대면채널 등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. <u>단, 이용기관 비대면채널의 경우 일부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</u></p> <p>제5조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 이용방법 ~ 제8조 금융회사 비대면 채널이용방법 (좌동)</p> <p>제9조 <u>이용기관</u> 비대면채널 이용방법</p> <p>고객은 <u>이용기관</u>의 비대면채널에서 해당 <u>이용기관의</u> 인증 정책에 따른 본인인증 및 휴대폰인증 등을 거쳐 서비스 이용등록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.</p>	<p>문구 수정(상호금융기관으로 용어 통일, 내계좌 지급 정지 반영)</p> <p>호 신설 (내계좌지급 정지반영)</p> <p>호 추가 (이용기관의 미 확대(금융기관 포함))</p> <p>문구수정 (이용기관 용어 반영, 내계좌 지급 정지 반영)</p> <p>문구수정 (이용기관 용어 반영)</p>

현행	변경	비고
<p>제10조 조회</p> <p>① 고객은 제4조에 따른 이용채널에서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이용방법에 의한 본인인증 완료 후 비밀번호 확인 없이 금융회사에 개설된 계좌 및 카드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제8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비대면채널의 경우 금융회사가 계좌 및 카드정보 조회서비스 제공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, 고객이 제7조에 따라 은행창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활동성 계좌에 대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.</p> <p>② 본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계좌 및 카드정보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에 게시합니다.</p> <p>③ ~ ④ (생략)</p> <p>제11조 잔고이전·해지 (생략)</p> <p><u>(신설)</u></p>	<p>제10조 조회</p> <p>① 고객은 제4조 이용채널에서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이용방법에 의한 본인인증 완료 후 비밀번호 확인 없이 금융회사에 개설된 계좌 및 카드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제8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비대면채널의 경우 금융회사가 계좌 및 카드정보 조회서비스 제공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, 고객이 제7조에 따라 은행창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활동성 계좌에 대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.</p> <p>② 본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계좌 및 카드정보 등은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에 게시합니다.</p> <p>③ ~ ④ (좌동)</p> <p>제11조 잔고이전·해지 (좌동)</p> <p>제12조 계좌지급정지</p> <p>① <u>고객은 제5조, 제6조의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제4조 이용채널에서 조회되는 수시입출금계좌 및 금융투자회사 계좌에 한하여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</u></p> <p>② <u>지급정지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이를 지체없이 처리합니다.</u></p> <p>③ <u>계좌지급정지시 해당계좌에 연결된 직불·체크카드 이용이 제한됩니다.</u></p> <p>④ <u>계좌지급정지가 되더라도 채권 압류·추심 등 법령에 따른 강제집행 및 권리행사가 우선됩니다. 단, 동 서비스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.</u></p> <p>⑤ <u>계좌지급정지에 의해 발생하는 자동이체 정지로 인한 결제대금·요금·대출원리금 등의 미납, 연체료 발생 등에 대해 금융회사와 금융결제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.</u></p> <p>⑥ <u>계좌지급정지의 해지는 금융회사를 통해 가능하며, 금융회사마다 해지 절차는 다를 수 있습니다.</u></p>	<p>문구수정</p> <p>문구수정</p> <p>조 신설 (내계좌 지급 정지 반영)</p>
<p>제12조 (고객의 개인정보보호) ~ 제14조 (서비스 이용 수수료) (생략)</p> <p>제15조 다른 약관과의 관계</p> <p>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각 항에 준용합니다.</p> <p>① 은행, 우체국, 저축은행의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,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,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, 관련 예금 및 신탁약관을 준용합니다.</p> <p>② 상호금융회사의 경우 예(탁)금거래기본약관,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,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(탁)금약관, 관련 예금 및 신탁약관 등을 준용합니다.</p>	<p>제13조 (고객의 개인정보보호) ~ 제15조 (약관의 변경) (생략)</p> <p>제16조 다른 약관과의 관계</p> <p>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각 항에 준용합니다.</p> <p>① 은행, 우체국, 저축은행의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,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,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, 관련 예금 및 신탁약관을 준용합니다.</p> <p>② 상호금융기관의 경우 예(탁)금거래기본약관,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,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(탁)금약관, 관련 예금 및 신탁약관 등을 준용합니다.</p>	<p>조 철회</p> <p>문구 수정 (상호금융기관으로 용어 통일)</p>

현행	변경	비고
<p data-bbox="113 147 718 219">③ 금융투자회사, 카드사의 경우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을 준용합니다.</p> <p data-bbox="379 271 448 304">부칙</p> <p data-bbox="373 349 454 387">(신설)</p>	<p data-bbox="746 147 1355 219">③ 금융투자회사, 카드사의 경우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을 준용합니다.</p> <p data-bbox="1015 271 1083 304">부칙</p> <p data-bbox="746 342 1235 378">이 약관은 2022. 12. 27. 부터 시행합니다.</p>	<p data-bbox="1380 288 1525 394">부칙신설 (약관 시행일 반영)</p>